

「구미시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 
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추은희 의원

2. 찬 성 자: 강승수 의원 외 7인

### 3. 제안이유

- 구미시 어린이와 노인·장애인 등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·영양관리를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·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 급식의 안전성 확보에 이바지 하고자 함.

### 4. 주요내용

- 목적(안 제1조)
- 정의(안 제2조)
- 시장의 책무(안 제3조)
-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(안 제4조)
- 설치 및 운영 등(안 제5조)
- 조직(안 제6조)
- 지원대상(안 제7조)
- 사무의 위탁(안 제8조)
- 감독(안 제9조)

## 5. 참고사항

### ○ 관계법령
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」 제2조, 제21조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음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, 제5조
- 「아동복지법」 제3조제1호
- 「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령」 제12조, 제12조의2
- 「노인·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음식안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2조

## 6. 검토의견

### ○ 본 조례안은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현행화하고, 운영 기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발의된 안으로,

### ○ 검토 결과,

- 어린이·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목적 및 운영 등 전반적인 기준을 구체화함에 따라, 어린이 및 취약계층 급식의 위생·영양 관리 지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, 관내 사회복지급식소 중 미등록 시설이 다수 존재하는 실정을 고려할 때, 미등록 급식소를 대상으로 현장 방문·상담 및 컨설팅을 강화하여 등록을 유도하고, 이를 위탁 성과 평가 항목에 반영하는 등 제도의 실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부서의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.